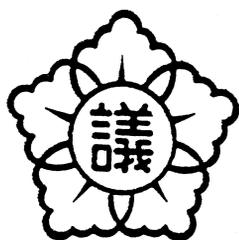


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

하 남 시 의 회

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5. 9. 17.

발 의 자 : 박진희 의원(등 2인)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 제17조 제1호 조문중에 개정이전 건축법이 적용된 사항을 현행 건축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7조 제1호 조문중에 개정이전 건축법이 적용된 사항을 현행 건축법에 맞추어 수정.(안 제17조제1호)

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7조제1호중 “같은 조 제2항에” 를 “같은 조 제3항에” 로 한다.

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7조(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)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건축물의 건축 :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,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,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</p>	<p>제17조(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조 제3항에</u> ----- ----- -----</p>

※ 관계법령

건축법

[시행 2015.7.7.] [법률 제12968호, 2015.1.6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 044-201-3763

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, 2014.1.14.>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.14.>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
2. 4층 이상인 경우
3. 구조, 존치기간,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4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, 홍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,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14.>